해운대자이 입주자 모집공고

※ 부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 임.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람.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셔서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2011.3.31까지는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함.

■ 주택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승인을 득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 – 28288호(2010.10.2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1067번지 일대

해운대자이 1단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22~25층 10개동 총 935세대중 일반분양분 708세대(특별공급분 151세대 포함, 조합 227세대 제외)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세대별 공급면적		소 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합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민영주택	2010000743(01)	59.5260(A)	87	59.5260	23.0913	82.6173	32.4464	115.0637	28.8169
	2010000743(02)	59.0621(B)	94	59.0621	22.0836	81.1457	32.1935	113.3392	28.5923
	2010000743(03)	84.9493(A)	50	84.9493	25.6163	110.5656	46.3041	156.8697	41.1245
	2010000743(04)	84.5368(B)	177	84.5368	24.9528	109.4896	46.0792	155.5688	40.9248
	2010000743(05)	84.5368(C)	176	84.5368	20.8965	105.4333	46.0792	151.5125	40.9248
	2010000743(06)	120.3642	124	120.3642	29.2375	149.6017	65.6079	215.2096	58.269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 부가세포함)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세대	분양가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10%)	중 도 금 (60%)						잔금 (입주지정일)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2011.02.15	2011.06.15	2011.10.17	2012.02.15	2012.06.15	2012.10.15	
59.5260(A)	87	최저가	65,389,500	132,760,500	198,150,000	19,815,000	19,815,000	19,815,000	19,815,000	19,815,000	19,815,000	19,815,000	59,445,000
		최고가	73,243,500	148,706,500	221,950,000	22,195,000	22,195,000	22,195,000	22,195,000	22,195,000	22,195,000	22,195,000	66,585,000
59.0621(B)	94	최저가	63,459,000	128,841,000	192,300,000	19,230,000	19,230,000	19,230,000	19,230,000	19,230,000	19,230,000	19,230,000	57,690,000
		최고가	71,049,000	144,251,000	215,300,000	21,530,000	21,530,000	21,530,000	21,530,000	21,530,000	21,530,000	21,530,000	64,590,000
84.9493(A)	50	최저가	94,759,500	192,390,500	287,150,000	28,715,000	28,715,000	28,715,000	28,715,000	28,715,000	28,715,000	28,715,000	86,145,000
		최고가	107,745,000	218,755,000	326,50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97,950,000
84.5368(B)	177	최저가	92,680,500	188,169,500	280,850,000	28,085,000	28,085,000	28,085,000	28,085,000	28,085,000	28,085,000	28,085,000	84,255,000
		최고가	105,435,000	214,065,000	319,5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95,850,000
84.5368(C)	176	최저가	91,591,500	185,958,500	277,550,000	27,755,000	27,755,000	27,755,000	27,755,000	27,755,000	27,755,000	27,755,000	83,265,000
		최고가	103,158,000	209,442,000	312,600,000	31,260,000	31,260,000	31,260,000	31,260,000	31,260,000	31,260,000	31,260,000	93,780,000
120.3642	124	최저가	122,450,434	275,349,566	397,80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39,780,000	119,340,000
		최고가	138,457,026	311,342,974	449,80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44,980,000	134,940,000

해운대자이 2단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25층 1개동 총 124세대중 일반분양분 33세대(특별공급분 8세대 포함, 임대 91세대 제외)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주택형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세대별 공급면적		소 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포함)	합 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민영주택	2010000744(01)	84.8053(D)	33	84.8053	35.3987	120.2040	44.1804	164.3844	50.585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 부가세포함)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세대	분양가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10%)	중 도 금 (60%)						잔금 (입주지정일)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2011.02.15	2011.06.15	2011.10.17	2012.02.15	2012.06.15	2012.10.15	
84.8053(D)	33	최저가	86,691,000	176,009,000	262,700,000	26,270,000	26,270,000	26,270,000	26,270,000	26,270,000	26,270,000	26,270,000	78,810,000
		최고가	97,020,000	196,980,000	294,0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88,200,000

■ 공통사항

- 당 아파트는 2007년 9월이후 입주자모집공고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 적용됨.
- 상기 분양대금은 주택법령 기준이며, 세금을 분양가대금 충당, 월별 등 주택이자를 감안하여 차등지정 하였으니, 건물주명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었으며, 전매면적 20㎡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아님(별도납부대상임 제외)
- 별도계약임을은 분양계약시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고, 발코니 새시는 필수계약 사항임이며, 별도계약임을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시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이 포함이 되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인데도 상기표 상기 공급대장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미비한 경우 전체공사비기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되 중도금 이자는 50% 무입지 도형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한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선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익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1차시 10%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는 공사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임.
- 시공자사가 정해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시공부지지상건축물 포함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시공자와의 부도, 파산 등으로 모중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자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 전자상거래표시 당첨시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동별, 호별, 호별로 구분됨.
- 본 아파트의 분양동다금은 당사와 대출권한 양타협하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동해 납입할 수 있음로, 대출 미신청자의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의 적접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분양가격는 별도계약임은은 미포함 되어 있음.
- 분양가격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예정시 불출상태에 완납하여야 함.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납입일이 토 ·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익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청약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입)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기주자격, 가주거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청약자 본인은 해운대자이주택공사를 한번 방문하여 청약자격 및 세대현황 등을 신청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 부적격자 및 재당첨 청약자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
- 본 주택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권은 예금종류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 2 ·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1항)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2011. 3. 31까지는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함)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금액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원이거나 본인 세대원이거나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만 60세미상 직계존속이 공유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부적합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한 감점은 적용됨	무주택 기간	2010.11.05 (금)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 일시 : 2010.11.15(월)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국세청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제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거나 본인 세대원이거나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지정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1순위로 접수됨,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2순위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102㎡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983.8.20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5.20이전 주택 청약부금가입자 중 청약저축 납부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신 분		2010.11.08 (월)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 한 분(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상위 청약제한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2010.11.09 (화)	• 국민은행 본지점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08:00~16:00)	
	3순위	공통자격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당첨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의 취청소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해당되는 일반 특별공급, 제10조 제7항에 해당하는 3자녀 특별공급, 제10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의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하고, 특별공급 신청 이달시 전매불문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시 신청자의 직교로 인한 발생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토 또는 확인결과 판정요소 자격이 대조계 부적격기준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이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당첨자는 해당 예비당첨자 중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여 공급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제외당해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2011. 3. 31까지는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음.
- 특별공급대상자의 부적격사유는 관계법령에 의거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3) 3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7항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생신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인 자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공사일 갖춘 자녀소를 입양하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자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사옥에서 신청이 제한됨.
- 임신한 경우 입주자로 제출시 출산관련증명서를 제시 낳을때 전자식 임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미제출, 허위임신 및 불법낙태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해당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함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작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신청방법
- 상기 대상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① 1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가 주택공급신청서 또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② 2순위 : 혼인 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②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전년도(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2010.01.26 통계청 고시)

구 분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평균소득			
	3인 이하	4인	5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88,647원 이하	4,229,126원 이하	4,702,698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4,666,376원 이하	5,074,951원 이하	5,643,238원 이하	

※ 2010년부터 "한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한인 이상 가구"도 5인 이상 월평균 소득에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람.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배우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 · 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신청
[단, 가구원 월평균소득 신청시 입양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와 관계없이 가구원수 1명으로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본인 세대원에무자, 세대주의 직계 존 · 비속의 소득합산이며,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 (신청자의 만 20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의 소득도 합산
- 세대원의 성명, 병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공고기준고시일, 사할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이후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고기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증명.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번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조서등)로 근로 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공급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61세대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는 신청 불가
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신청자격	공급세대수	1단지						2단지	
		59.5260(A)	59.0621(B)	84.9493(A)	84.5368(B)	84.5368(C)	120.3642	84.8053(D)	
일반 특별공급	61	9	9	5	18	17	–	3	
3자녀 특별공급	37	4	5	2	9	9	6	2	
신혼부부 특별공급	61	9	9	5	18	17	–	3	
합계	159	22	23	12	45	43	6	8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견본주택 방문 신청
6)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일반 특별공급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양식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증(장애인증명서)및자가도 등 기타서류 불가)
3자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해당기준표당시 건본주택에 비치 또는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 도 또 제외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또는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 직계존비속 및 부모확인서상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주민등록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양식(공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미연에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제출 – 미혼인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미연에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제출 – 미혼인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출)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증명서 1통(청약예금 가입은행 및 청약부금 가입은행 – 인터넷 청약 www.apt2you.com)에서 발급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 (당시 견본주택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 본인 발급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발급 가능 – 임신증명서(의사를 임신증인 경우)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실 확인서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자료 – 주민등록 – 인감증명 – 전월(전년 20일 이하 청약일 청약예정 및 청약부금 가입은행 서청자는 주민등록표본 – 인터넷 청약 www.apt2you.com에서 발급가능) – 인감증명서약국용 신청용)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서류미비시 당사는 접수반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자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와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사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일반공급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
- 본 주택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권은 예금종류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 · 2 · 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1항)
(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2011. 3. 31까지는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함)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금액

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원이거나 본인 세대원이거나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만 60세미상 직계존속이 공유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부적합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한 감점은 적용됨	무주택 기간	2010.11.05 (금)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08:00~17:30	• 일시 : 2010.11.15(월)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국세청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제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거나 본인 세대원이거나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지정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1순위로 접수됨,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2순위	85㎡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102㎡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그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983.8.20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5.20이전 주택 청약부금가입자 중 청약저축 납부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신 분		2010.11.08 (월)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 한 분(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적립한 금액이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상위 청약제한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2010.11.09 (화)	• 국민은행 본지점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08:00~16:00)	
	3순위	공통자격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가점제 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제한 없음(모든 청약자는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당첨되지 못한 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주택형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				

※ 당첨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의 취청소세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해당되는 일반 특별공급, 제10조 제7항에 해당하는 3자녀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의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당첨된 경우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하고, 특별공급 신청 이달시 전매불문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시 신청자의 직교로 인한 발생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토 또는 확인결과 판정요소 자격이 대조계 부적격기준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